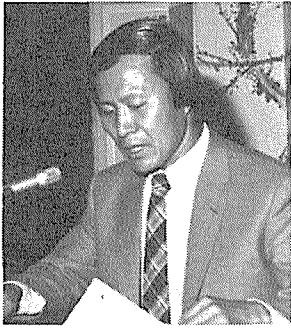


原資材 輸入과 關稅政策

— 石油類를 중심으로 —



梁 承 滿

(財務部 關稅政策課長)

I. 머리말

최 근의 수출 둔화 및 사치성소비재 수입증가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들간에 國際收支赤字 및 外債累增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99천km²의 좁은 国土에 4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原油 등 工業用原材料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原資材와 관련된 제반정책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된다.

「原資材」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원유·석탄·가스·우라늄·철·동·알루미늄·鉛·아연·錫·重石 등의 에너지 및 鈹物資源과 소맥·대두·옥수수·원당·원면·生고무·양모·원피·원목·우지 등 公業용 기초원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특히 石油類를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資源動向

1. 概 況

우리나라에는 약 250여종의 鈹物資源이 부존되어 있

으며 無煙炭, 重石, 鉛, 망간 등은 품위도 좋고 매장량도 비교적 풍부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鈹物資源은 품질이 낮다든지 매장량이 빈약하며, 原糖, 原毛, 生고무 등 公業용 주요원자재는 생산이 全無한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특히 重化學工業上 중요한 석유의 부존도 全無하여 세계적인 石油需給情勢의 불안과 함께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鈹物賦存의 특징으로 ① 鈹種의 다양성 ② 主要鈹種의 결여성 ③ 鈹량의 소규모성 ④ 저품위성 및 ⑤ 부존상태의 深部性과 散在性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광물부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鈹物供給의 제약요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첫째, 国内에 전혀 부존되지 않아 그 공급을 国内資源基盤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러한 鈹種으로는 석유, 유연탄, 천연가스, 보오크사이트, 燐鈹石, 유황, 白金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부존량의 규모가 적은데다 그나마 산재한 까닭에 鈹區單位의 부존량은 더욱 적다. 따라서 대량생산을 전제하는 대량공급은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생산의 規模經濟를 누릴 수 없는데다 매장의 深部性에 기인하여 생산비용이 더 요구된다. 높은 생

산비에도 불구하고 품위가 낮아서 얻게되는 성분량은 매우 적다. 따라서 鈹物의 廉價供給이 어려운 것이다.

네째, 賦存資源의 절대량이 적고 가채비율이 낮으므로 鈹物供給은 대부분 수십년내에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資源에 대한 수요는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추진기인 1967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1970~1979년 간 주요원자재 수요증가율을 보면, 原油, 銅, 亞鉛, 알루미늄, 鉛, 大豆, 옥수수 등 대부분의 주요원자재의 모두가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수요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주요원자재는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며, 특히 原油, 生 고무, 原毛, 原糖, 牛脂 등은 국내부존이 전무하므로 이들 품목의 높은 수요증가는 모두 수입에 의하여 충족되었다. 다만, 銅, 亞鉛, 알루미늄 등 非鐵金屬과 小麥, 大豆, 옥수수, 原綿, 原木 등 일부 공업용원자재는 국내생산에 의하여 수요의 일부가 충족되고 있다.

1970년 銅의 자급률은 56%에서 1979년에는 80%로 4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亞鉛은 18%에서 96%로, 古鉄은 25%에서 46%로 높아진 반면에 알루미늄·小麥·大豆·原木·鉛 등은 자급률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옥수수의 자급율도 75년의 24%를 고비로 하여 차츰 낮아지고 있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에너지자원의 特徵

가. 에너지供給의 海外依存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에너지資源이 극히 빈약한 나라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에너지자원부존이 빈약한 것은 아니다. OPEC 產油國·美國·소련·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각국도 거의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供給의 해외 의존도가 타국에 비하여 훨씬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77~81년의 제 4 차 5 개년계획기간중 GN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동기간중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7.4%나 증가하여 에너지소비증가율이 항상 GNP 성장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에너지 國內供給은 거의 한계에 달하여 에너지 공급의 해외 의존이 날로 심각하여져 갈 전망이다. 에너지 供給의 해외

의존도 深化現狀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보다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에너지공급의 해외 의존도 深化現狀은 다음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 나라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서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라 급속도로 에너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너지 수요의 소득(GNP) 彈性值를 살펴보면, 79년의 경우 1.88로서 GNP 성장속도보다 에너지 수요증대속도가 1.88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先進外國의 경우 에너지 수요증대속도가 GNP 성장속도보다 낮아 에너지 수요의 所得彈性值가 1 미만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에너지需要의 所得(GNP) 彈性性 國際比較 (1979년)

韓 國	日 本	프 랑 스	美 國
1.88	0.80	0.59	0.13

우리의 경우 에너지수요의 所得彈性值가 높은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한 經濟開發施策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제 4 차 5 개년 계획기간중 중화학공업에 대한 集中投資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多消費型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素材産業育成政策은 에너지 소비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대체에너지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는 先進國과는 달리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太陽熱 등 非消耗性 再生 가능한 대체에너지源 개발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先進國 등은 석탄 및 가스 등 石油代替 에너지자원의 集中開發은 물론, 21세기를 내다보고 非消耗性 에너지源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新에너지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경제사회구조의 調整作業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 특히 석유의존도 深化는 국제에너지 정세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 에너지資源 保有國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하겠다.

나. 에너지 소비의 石油依存도가 높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

(單位: 石油換算, 千톤)

구분 \ 연도	1967	1971	1978	1981	1983
총에너지수급	13,948	20,868	38,252	46,052	49,700
수입에너지	3,772	10,596	26,551	34,635	37,167
수입의존도 (%)	27.1	50.8	69.4	75.2	74.8

* 總에너지中 石油類 比重추이

연도	1961	1971	1978	1981	1983
비중 (%)	8.1	50.6	63.5	58.4	56.2

Ⅲ. 83/84年 關稅制度 개편 내용

1. 배경

우리나라 製造業부문의 에너지消費구조를 보면, 에너지源간의 代替性이 극히 낮은 경직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수요에 있어서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차례의 石油波動에 불구하고 계속 증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구성에 있어서 石油의 비중을 보면, 1961年의 경우 8.1%에 불과하던 것이 1971년 50.6%, 1978년 63.5%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 2차 石油波動 이후 강력한 脫石油政策을 추진한 결과 1983년에는 56.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선진제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石油依存度를 낮추기 위하여 發電部門에서의 原子力, 유연탄 및 LNG 대체사용으로 유류발전 비율이 81년의 79.8%에서 83년에는 68.8%로 감소되었으며, 오는 91년에는 16.9%로 대폭 낮출 계획으로 있다.

산업부문에서도 石油代替가 이루어져 양회업계는 82년 유연탄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염색공업등 일반산업체에서도 유연탄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어 産業用油類의 증가율은 수송용 및 가정·상업용의 증가율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60-70年을 일관해온 정부주도하의 産業別差等保護와 차등지원정책에서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내외경쟁을 과감히 도입하여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율개방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능률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80년대의 産業政策방향이라 하겠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상품시장의 公正去來体制確立, 금융시장의 자율화, 조세제도의 公평성제고와 대외적으로는 수입자유화의 확대등 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각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83년도말에 관세를, 관세지원제도 및 通關制度를, 84년말에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2. 關稅率개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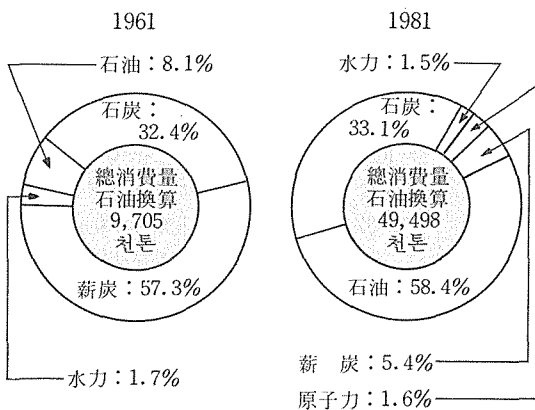
대내외 經濟與件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關稅率을 다음과 같이 競爭促進的 体系로 개편하였다.

가. 全産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원료의 關稅率을 인하하였는 바,

- (1) 液化天然가스, 천연부산·유연탄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그 물량이 절대 부족한 原資材의 稅率을 5%로 인하하고,
- (2) 황인, 메탄올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原資材의 稅率을 10%로 인하하며,
- (3) 또한 原皮, 生毛皮 등 수출물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稅率을 인하하였다.

나. 산업간·품목간 公正競爭基盤을 조성하기 위하여 高稅率体系에 의한 過保護 및 差等稅率体系에 의한 세율격차를 축소하였다.

* 우리나라 에너지 消費構造



(1) 즉 織物類, 신발類 등 지금까지 높은 保護關稅率을 적용받던 품목의 세율을 1984년에 40%로 인하한 후 1988년까지 점진적으로 20%로 인하하도록 하며,

(2) 다른 산업의 投入財 및 생산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경쟁력이 확립된 물품과 경쟁력이 약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경쟁력이 확립된 물품은 1984년부터 20%로 인하고 경쟁력이 약한 물품은 1984년에 30%로 인하한 후 1988년까지 점진적으로 20%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다. 기타 특별한 考慮가 필요한 품목들에 대하여는 適正關稅率을 설정하였다.

(1) 先進國에서도 높은 稅率을 적용하고 있는 酒類·담배 등은 高關稅率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2) 航空機 등 국제경쟁산업이나 국방목적상 필요한 품목 등은 현행 無稅를 계속 유지하며,

(3) 機械類 등과 같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따라 稅率의 인상이 필요한 품목은 稅率을 상향 조정하고,

(4) 채소류, 果實類, 特用作物, 낙농제품 등 農家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의 現行稅率을 1988년까지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하였으며,

(5) 또한 消費財는 關稅率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1988년까지 30%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라. 기타 投入財와 완제품간의 稅率逆進을 시정하고 유사물품간의 稅率隔差를 축소하였다.

3. 關稅支援制度개편내용

關稅支援制度에 있어서도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달을 위하여 特定産業·業種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지원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지원의 均等·最少化로 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施設財 減免은 기술개발주도산업인 기계공업(일반기계제조업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및 電子工業(전자기기부분품 및 원재료제조업과 산업용전자기기제조업)에 한정하고 기타의 산업에 대하여는 減免支援을 폐지하였으며(第28條),

나. 原料品 減免은 대외직접경쟁관계에 있는 外航船舶 및 外航航空機 原料品에 한정하고 기타의 原料品에 대하여는 減免支援을 폐지하였고(第28條의 4)

다. 과학기술연구용 計測機器 및 조정기기에 대하여는 關稅減免支援을 하도록 하였다(第28條의 5 第1

項 第9号).

라. 또한 施設機械類에 대한 分割納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업종에 관계없이 물품을 기준으로 均一支援하도록 하였으며(第36條 第1項 第1號)

마. 한편 關稅支援對象에서 제외되는 製鐵製鋼業·造船業 및 자동차제조업·石油精製業·鉅業(液化天然가스貯藏業 포함)·發送電業·船舶 및 그 內然機關과 농약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減免支援할 수 있도록 하였다(附則 第5條).

4. 通關制度 等

國際關稅協約의 수용 등을 통한 通關管理制度的 국제표준화 및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貿易規模의 증대에 대처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關稅行政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가. 彈力關稅制度를 다음과 같이 補完하였다.

(1) 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서 수입의 금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稅率을 인상 적용할 수 있는 調整關稅制度를 신설함과 동시에(第12條의 2)

(2) 덤핑防止關稅·相計關稅의 발동요건 및 절차상의 未備點을 보완하였다(第10條 및 第13條).

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關稅를 부과하던 것을 국제협정에 맞추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關稅를 부과하도록 評價制度를 개편하였으며(第9條의 3 내지 第9條의 10).

다. 關稅의 징수절차를 內國稅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1) 第2次 納稅의무자의 범위를 擴大하고(第6條),

(2) 納付期限을 경과한 경우 滯納關稅에 대한 加算金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第17條의 3).

구 분	從 前	改 正
基本加算金	○納期경과시: 100분의10	○納期경과시: 100분의5
重加算金	○納期 30日 경과시: 100분의5 추가	○納期每 1月 경과시마다: 100분의2씩추가
	○納期 60日 경과시: 100분의5 추가	○加算金 총액은 滯納稅額의 100분의25를 초과하지 못함. ※滯納稅額이 50萬원 미만인 경우 重加算金을 賦課하지 아니함.

(3) 한편, 關稅의 過誤納金을 환급할 때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加算金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第24條의 3).

라. 通關節次를 간소화 하였다. 즉,

(1) 託送品·別送品·航空機修理部品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第8條)

(2) 合議稅率 적용요건을 완화하였고(第8條의 2)

마. 또한 關稅士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第186條의 5).

5. 關稅還給制度

關稅등의 환급절차를 개선하여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수출부담비용을 줄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하도록 하였다.

가. 概算額先還給后精算制 實施

수출업체의 資金負擔 완화를 위하여 수출 즉시 전년도 평균환급액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概算額先還給 后精算制를 실시하고 현행 關稅징수유예기간을 原材料 수입시부터 제품수출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수입물품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나. 原材料 總括管理制度的 도입

환급 確認事項 및 첨부서류는 통합·간소화 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이 되는 수입연장 유효기간을 로컬거래단체별로 1년씩 부여, 연장하고 原材料 品名單位(CC CN 8단위 기준)의 업체별 平均 納付稅額을 환급하는 原材料總括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다. 副材料定額還給制的 확대

모든 수출물품의 副材料는 關稅負擔額이 미미하므로 미리 정한 정액환급율표에 따라 환급함으로써 환급서류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라. 還給制限制度的 産業政策的 운영

還給金 지급제한제도는 國產原材料의 사용을 산업정책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마. 記帳相計制度的 併行實施

수입한 輸出用原材料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로컬 공급하지 않고 주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關稅庁長이 지정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原材料에 대해서는 업체

의 신청에 따라 수입시에 再輸出條件附로 1년6월간 장기 징수유예 했다가 수출이행시 이를 相計하는 제도를 병행 실시토록 하였다.

바. 還給對象輸出의 합리적조정

※ 우리나라나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의 수출 또는 水産業法 第13條 또는 第23條의 규정에 의하여 水産庁長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外國貿易船인 경우에 限한다)에 無償으로 송부하는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으로 함으로써 燃料油 또는 潤滑油 공급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V. 石油類와 關稅政策

1. 기본방향

石油類에 대한 관세정책은 장기적에너지 수급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세의 재정목적보다는 산업정책적 機能強化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절약형 産業基盤構築, 에너지利用合理化 및 代替에너지 개발투자유도, 에너지源의 원활한 수급지원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석유류의 관세율

가. 原油에 대하여 국제원유가격 하락을 계기로 83년 4월 18일 부터 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國際原油價 下落으로 절약되는 도입비용을 전부 국내유가 인하여 사용하여 高油價時代를 堪耐한 고통의 대가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유가 인하여 국내물가하락을 유도하여 經濟安定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유가의 전반적 인하는 석유소비를 조장하고 에너지節約型 産業構造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물가의 下方硬直性 때문에 국내유가 인가가 직접적으로 국내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國際原油價格引下分중 일부를 基金 및 關稅로 흡수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基金徵收 및 관세부과로 마련된 財源은 代替에너지개발, 에너지利用合理化事業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投資財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국민경제에 이익할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價格反騰時에 기금 또는

관세의 탄력적 운용으로 價格緩衝役割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물가안정 및 에너지 수급 원활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체로 우리와 유사하게 대처한 경우가 많았다.

이리하여 국제원유 가격하락(32\$/B→29\$/B) 으로 인한 導入原油複合單價 下落分 배럴당 4.5달러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배럴당 1.36달러는 國內油價引下(4.76% 인하)에 사용하고 나머지 70%중 安定基金으로 배럴당 1.72달러를 징수하고 關稅로 배럴당 1.45달러(5%)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石油 安定基金은 83년중 총1,910 억 원에 이르러 그중 1,000억원은 韓國電力의 國民投資基金 용자를 대체하는데 사용되었다. 韓國電力 용자로 인하여 여유가 생긴 國民投資 基金은 水資源개발사업에 420억원, 滯貨無煙炭 비축에 252억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사업에 238억원, 延拂수출지원에 400억원, 國產機械구입자금지원에 300억원, 電子 및 半導體 산업지원에 200억원 그리고 나머지 100억원은 重化學工業 支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財政部門에서는 석유관세부과로 財政收入이 확보됨으로써 타기초공업용 原資材의 관세를 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전반적 산업경쟁력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工業用原資材에 대한 관세징수는 83년도중 4,276억원으로 平均徵收稅率이 17.6%나 되어 그동안 업계부담이 무거웠을 뿐더러, 물가에 대한 압박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나. 液化天然가스(LNG)의 關稅率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조정하였다. 天然가스를 原油와 같은 차원의 물품으로 취급함으로써 석유의존적 수요패턴을 시정하고 에너지 供給源의 다양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LNG는 可採年數가 석유에 비해 비교적 길고 供給契約 자체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석유에 비해 지역적으로 부존이 산재해 있어 에너지源의 다원화 및 물량의 장기안정 확보에 유리하며 無公害燃料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대체물로서 나프타보다 저렴하여 석유화학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처럼 天然가스 베이스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휘발유·燈油등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石油 1次製品에 대해서는 石油消費節約型 경제구조를 유도하고 석탄가스 등 類似燃料와의 세율균형을 위하여 종전 5%의 관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다만, 산업용 燃料인 B-C유등 重質油와 輕油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燃料費用부담 가중으로 인한 價格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종전과 같이 5%의 세율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石油化學工業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B-C油·輕油등 産業用石油製品과의 세율평 균을 위하여 기본세율을 5%로 책정하였으나 수출비중이 큰 石油化學製品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하여 종전에 만성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割當稅率 2%를 暫定稅率 2%로 현실화하였으며 그후 다시 割當關稅 1%로 인하하였다(84. 4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產油國 및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값비싼 나프타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原料費用面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에 수입나프타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는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天然가스 베이스로의 施設改替가 이루어지고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노력 결과 경쟁력이 확보되어 기본세율 5%의 關稅負擔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나프타에 대한 低率關稅의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다.

* 石油類 關稅率

	從前(83)	改編(84-88)	備 考
原 油	5% (暫定無稅)	5% (일부할당 1%)	에너지供給의
液化天然가스	10%	5%	多元化
나 프 타	5%	5% (잠정2%)(할당1%)	石油化學工業基礎原料
重油(B-C油)	5%	5%	産業用燃料
輕 油	5%	5%	
휘 발 유	5%	10%	石油消費節約
燈 油	5%	10%	

3. 에너지産業用施設材 도입에 대한 關稅減免 및 關稅分割納付制度

가. 石油精製業에서 소요되는 施設材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85년말까지 연장함으로써 重質油와 輕

質油間의 수급불균형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였고
 나. 太陽熱 이용기기 제조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實行關稅率의 65% 내지 70%까지 關稅減免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太陽에너지 開發投資誘引을 부여하였으며(租減法)

다. 에너지절약용 施設材 도입시에 關稅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들 施設材導入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라. 이밖에도 정부비축용 원유 및 LPG에 대하여는 비축장소를 보세창고로 특허하고 보세장치기간을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승인함으로써 수입제세의 부담없이 장기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關稅還給制度에서도 우리나라와 外國간을 왕래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用으로 사용될 연료유나 운환유 등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國產 燃料油 또는 운환유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하였다.

* 에너지産業 施設材導入에 대한 關稅減免 및 分割納付制度

區 分	支 援 內 容	備 考
重質油分解 (cracking)施設材	一輕減率: 84 / 85 50% / 40%	●輕減期間: 85. 12. 31까지 ●物品: 41개
太陽熱利用器機 製造用 機資材	一輕減率 ●實行關稅率20% 以下物品: 65% ●實行關稅率20% 超過物品: 70%	●輕減物品: 吸熱 板 등 5개物品
에너지 節約用 施 設材	一分割納付 ●期間: 5年以內	●關稅廳長이期間 決定 ●物品: 10개

V. 換率·油價 및 關稅

현재 政府는 83. 12. 1 油價조정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精油社 추가부담 보전을 위하여 關稅 및 基金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政策決定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今番의 환율상승에 따른 油價對策 검토에 있어 개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油價는 원칙적으로는 換率 및 國際石油價 等の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되어야 하며 만

일 유가인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선 石油事業 基金의 인하 내지 폐지와 石油事業基金의 여유자금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變動換率制의 채택으로 換率의 國際收支 자동조정기능을 기하려는 우리의 換率政策 方向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① 原油에 5%의 關稅率을 책정한 상황 및 정책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량은 총수입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國際收支惡化 및 外債累增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기초에너지인 原油에 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物價上昇 및 산업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石油類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비절약이 용이한 資源이다. 우리의 수입구조상 수입이 불가피한 食糧, 原油, 其他工業用 原材料, 기계등 資本財 수입이 84년 기준으로 전체수입의 96.6%를 점하고 있는 현실 및 關稅歲入이 전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比率(4次計劃期間中 13% 水準) 등을 고려할 때, 原油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소비절약, 국제수지개선, 외채축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他工業用原材料의 關稅率(9.02%) 인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부담분을 關稅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油價調整은 불가피하므로, 환율상승에 따른 관세인하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만 초래하는 일시적 방편이다.

③ 關稅는 國際原油價格 自体가 급등하거나 환율이 일시에 대폭 상승할 경우에 대비한 충격완화 수단으로 계속 보유함이 타당하다.

④ 환율상승은 모든 수입물품의 價格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精油産業에 대하여만 關稅引下로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만일 今年度中 國際原油價의 하락등 追加利潤要因이 발생하여 환율상승에 따른 精油社의 추가부담분을 상쇄하게 되는 경우에는 原油에 대하여도 당연히 關稅 본연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VI. 맺는 말

오늘의 政策懇談會가 우리의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화와 이에 따른 國際收支改善 내지 外債減少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